

「대구출판산업단지」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84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10. .

제안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·관리를 위해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역 출판·인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「대구출판산업단지」 관리업무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관리권자 등), 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 등)
-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의 2(관리업무를 위탁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, 제13조(계약의 체결)
- 「산업단지 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 제4조(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사무 기준), 제5조(위탁사무 대상), 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, 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, 제18조(위탁계약 체결)

○ 필요성

- 2014. 6월 분양 완료된 출판산업단지의 효과적 관리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전문 관리기관의 위탁관리가 절실함.
- 최근 산업단지별 혁신역량 강화 및 범부처 통합 산단 지원사업 참여 등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산업단지의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리공단에 관리업무 위탁이 필요함.

다. 위탁대상사무 및 범위 : 「대구출판산업단지」 관리업무 전반

라. 「대구출판산업단지」 주요 위탁사무

- 산업단지 행정(민원)업무
 - 산업단지 입주(변경)계약 및 해지, 공장 등 임대신고
 -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(팩토리온), 공장처분 신청
- 산업단지 기업지원 업무
 - 입주기업 간담회, 근로자 복지·교육 사업
 - 입주기업 지원사업 홍보
- 산업단지 기본관리 업무
 -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통계 분기별 조사(입주기업·가동기업·근로자수·생산액·수출액 등)
 -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추진, 환경개선사업(사인물 교체 등)
- 산업단지 안전관리 업무
 - 산업단지 공해 및 재해에 관한 안전관리
 - 수시 환경순찰

마. 위탁기간 : 3년(2021년 3월부터)

바. 위탁방법 :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

사. 수탁기관 : (사)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(이사장 추광엽)

아. 2021년도 위탁비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세부내역	소요금액	비 고
계		130	
사 업 운영비	환경개선비 홍보 및 교육비	15	▶ 환경개선사업(사인물 교체) ▶ 홍보물 제작 등 대외홍보 ▶ 입주기업 간담회
인 력 운영비	급여 및 보험	100	▶ 인력 3명
일 반 운영비	여비 및 수용비 기타경비	15	▶ 관내출장비 등 ▶ 기타 필요경비

3. 위탁업무 지도·감독 (관리권자 : 대구광역시장)

- 승인 및 기타사항
 -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
 - 관리공단 재산의 매각 등 사전 승인
 - 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이사 변경 승인
 -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보고사항
 - 입주기업체의 생산·수출·고용, 입주업체 수, 가동률 등 각종 통계
 - 입주계약 체결(변경, 해지 등) 현황
 -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

4. 향후일정

- 관리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1. 2월
-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·고시 : 2021. 3월

5. 기대효과

-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
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 활성화
- 관리기관 접근성 향상으로 각종 민원(입주계약, 공장등록, 처분 등) 업무의 신속처리 및 현장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가능

6. 붙임자료

- (참고 1)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
- (참고 2) 관계법령

참고 1

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업무 위·수탁 추진계획

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·관리를 위해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역 출판·인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.

1

추진배경

- 2014년 6월 분양 완료된 출판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의 위탁 관리가 절실함.
- 업무 효율성 및 기업 접근성을 고려, 인접한 (사)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함.

2

세부 추진계획

① 추진근거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
- 「산업단지관리지침」 제4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등

◆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 등)

-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.

◆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

-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을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.

◆ 지방자치법 제104조

◆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

② 위탁개요

- 수탁기관 : (사)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(이사장 추광엽)
- 위탁개시 : 2021. 3월(예정)
- 위탁범위 : 산업단지 내 관리대상 시설 일괄 위탁

③ 위탁내용

- ▶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
- ▶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산업단지의 관리업무)

○ 산업단지 행정(민원)업무

- 산업단지 입주(변경)계약 및 해지, 공장 등 임대신고
-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(팩토리온), 공장처분 신청

○ 산업단지 기업지원 업무

- 입주기업 간담회, 근로자 복지·교육사업
- 입주기업 지원사업 홍보

○ 산업단지 기본관리 업무

-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통계 분기별 조사(입주기업, 가동기업, 근로자 수, 생산액, 수출액 등)
-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, 환경개선 사업(사인물 교체 등)

○ 산업단지 안전관리 업무

- 산업단지 공해 및 재해에 관한 안전관리
- 수시 환경순찰

4] 수탁기관 지원

○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

- 연간 130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(관리인력 3명 인건비 등)

(단위 : 백만

원)

구 분	세 부 내 역	소요금액	비 고
계		130	
사업운영비	환경개선비 홍보 및 교육비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환경개선사업(사인물 교체 등) ▸ 홍보물 제작 등 대외홍보 ▸ 입주기업 간담회
인력운영비	급여 및 보험	100	▸ 총 3명
일반운영비	여비 및 수용비 기타경비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▸ 관내출장비 등 ▸ 기타 필요경비

⇒ 출판산업단지 규모<입주 - 102개 업체('20. 10. 1.기준)> 및 입주허용 업종이 제한되는 특수한 상황('20년 출판산업단지 점검시 입주업종 위반 및 불법 임대 등 위법사례 다수 발생<고발2, 수사의뢰11, 과태료처분11)> 등을 고려할 때 3명의 인력이 필요함.

⇒ 준공('13. 1월)이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가 전무한 상황으로 ▶(산업단지 안전관리실태/'20. 8. 26.행정안전부) 감찰시 안전관리실태 지적, ▶(추석맞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/'20. 9. 17.평가담당관)시 환경정비 분야(폐간판 지적) 관련된 추가 업무를 참작한 예산임.

5] 위탁업무 지도·감독(관리권자 : 대구광역시장)

○ 승인 및 기타사항

-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
- 관리공단 재산의 매각 등 사전 승인
- 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이사 변경 승인
-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○ 보고사항

- 입주기업체의 생산·수출·고용, 입주업체 수, 가동률 등 각종 통계
- 입주계약 체결(변경, 해지 등) 현황
-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

3 기대효과

-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
- 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활성화
- 관리기관 접근성 향상으로 각종 민원업무(입주계약, 공장등록, 처분 등)의 신속처리 및 현장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가능

⇒ 출판산업단지는 달서구 장기동, 장동, 월성동 일대에 위치하였고 성서 2·4차 산업단지 인근으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사무소와는 직선거리 1.9km임.

※ 각 공단과의 직선거리

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(13km) /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(12.2km)
제3산업단지관리공단(9.6km) / 서대구산업단지공단(4.3km)

4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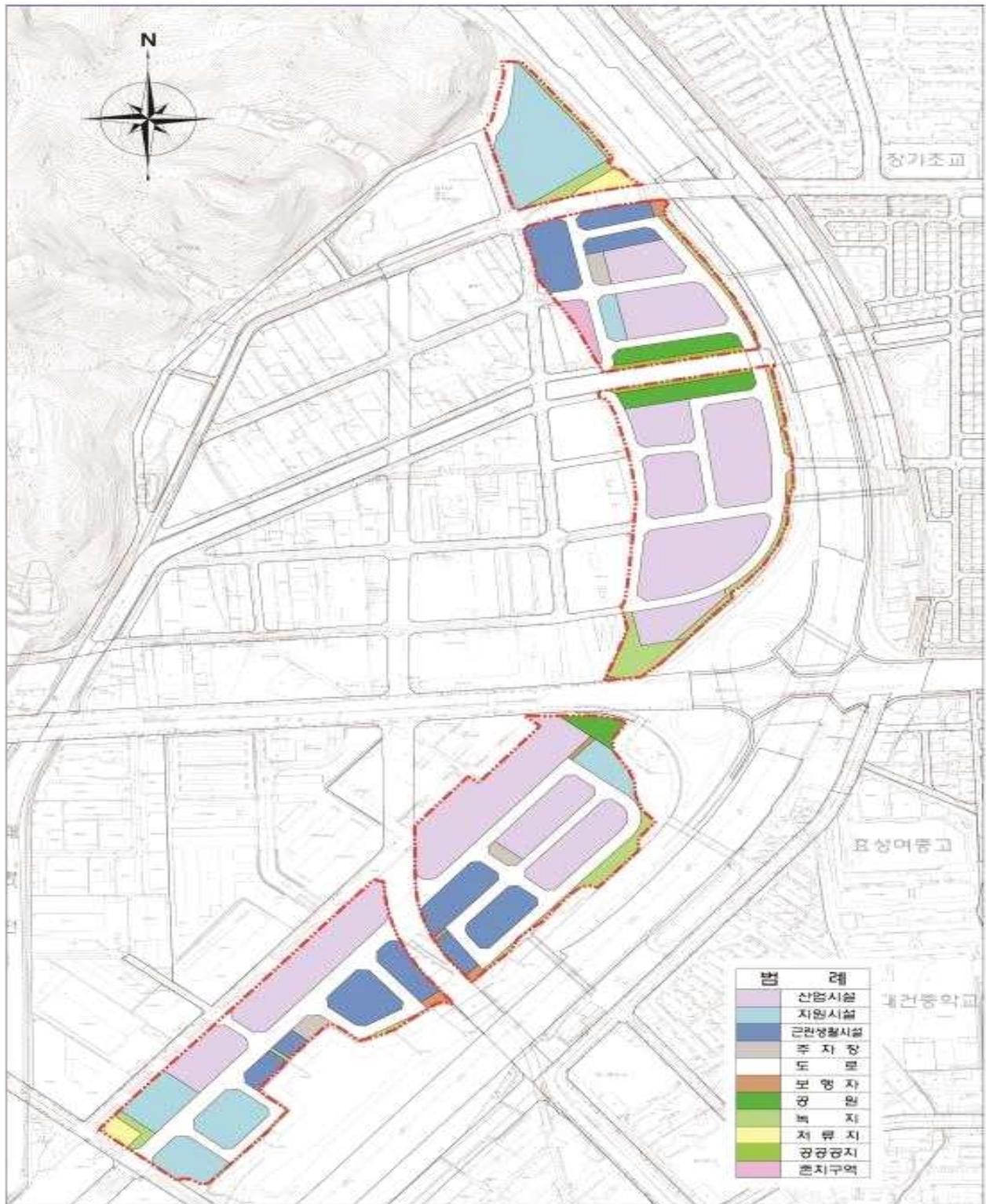
- 성서산업단지 민간위탁 사전 협의 : '20. 9. 1.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(적정) : '20. 10. 22.
-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: '20. 11월
- 관리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 : '21. 2월
-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·고시 : '21. 3월

<붙임 1> 위·수탁 대상

□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242,916.9	100.0	
산업시설구역	소 계	93,966.8	38.68	
	제 조 업	92,310.3	38.0	
	존 치 용 지	1,656.5	0.68	1개소
지원시설구역	소 계	60,398.3	24.86	
	지원시설용 지	30,195.4	12.43	
	근린생활시 설 용 지	27,642.5	11.38	
	주 차 장 용 지	2,560.4	1.05	3개소
공공시설구역	소 계	66,440.3	27.35	
	도 로	62,509.9	25.73	
	보행자도로	1,371.1	0.56	5개소
	저 류 지	2,267.5	0.93	2개소
	공 공 공 지	84.5	0.04	2개소
	오수중계펌 프 장	207.3	0.09	1개소
녹 지 구 역	소 계	22,111.5	9.11	1개소
	공 원	8,640.2	3.56	2개소
	녹 지	13,471.3	5.55	4개소

□ 토지이용계획도



<붙임 2> 출판산업단지 현황

- ▶ 위 치 : 달서구 장기동, 장동, 월성동 일대
- ▶ 조성기간 : 2010. 1월 ~ 2012. 12월
- ▶ 면 적 : 242,917㎡ (약 73,482평)

【출판산업단지 용도별 현황】

(단위 : ㎡)

구 분	계	산업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면 적	242,917	93,967	60,398	66,440	22,112

- 사 업 비 : 1,248억원(보상비1,030, 조성비142, 기타76 / 전액민자)
- 입주업종 :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, 출판업,
영상·정보서비스업
- 입주기업 : 102개 업체(※ 2020. 10. 1. 기준)
- 사업시행자 : 대구도시공사
- 추진경과
 - 출판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: 2010. 1. 10.
 -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: 2010. 7. 30.
 -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·고시 : 2010. 9. 20.
 - 산업시설용지 분양 : 2011. 5월 ~ 2014. 6월(※분양완료)
 - 개별공장 건축 : 2012. 5월
 - 사업 준공인가 : 2013. 1. 10.

<붙임 3> 지역 산업단지 위수탁 현황 및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현황**< 지역 산업단지 위·수탁 현황 >**

(단위 : 천㎡ /, 백만원)

산 단 명	전체면적 (산업용지)	입주 업체수	'20년 위탁금 예산			비 고	
			총 액	일반위탁금	사업위탁금		
계			1,969	627	1,342		
성 서	12,669 (7,430)	3,040	537	0	소 계	537	관리비 미지원 (자체수익 운영)
					-청사관리	50	
					-체육시설관리	151	
					-체육시설 개선	110	
					-셔틀버스	154	
					-인지사인물 관리	70	
					-환경정비	2	
달성1차	4,079 (2,537)	351	172	0	소 계	172	관리비 미지원 (자체수익 운영)
					-셔틀버스	170	
					-환경정비	2	
달성2차	2,707 (1,378)	278	533	0	소 계	533	관리비 미지원 (산단공 관리)
					-청사관리	100	
					-셔틀버스	433	
검 단	782 (570)	562	212	210	소 계	2	
					-환경정비	2	
대구제3	1,685 (1,194)	2,495	222	220	소 계	2	
					-환경정비	2	
서대구	2,662 (1,314)	2,363	293	197	소 계	96	
					-근로자회관 관리	94	
					-환경정비	2	

<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현황 >

- 대구성서근로자복지회관
- 성서다목적체육시설
- 성서공공폐수처리시설
-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1 ~ 5차 단지
 - 총 면 적 : 11,457,545㎡ (3,465,907평)
 - 업 체 수 : 3,040개
 - 근로자수 : 49,483명
- 출판산업단지 (2013. 12월)
 - 맨 홀 : 152개소 (원형맨홀 150개소 / 잠관 2개소)
 - 오·폐수 관거 : 고강성 PVC 이중벽관 6,780m (Φ200관 4,710m, Φ300관 2,070m)
 - 출판산업단지 오·폐수 중계펌프장 (1개소)

구 분	규 격	단위	수량	비 고
중계펌프장	구체 (B2.5×L2.0×H8.9)	개소	1	
	펌프 (수중모터(커터형), 삼진공업) (1.1m ³ /min×10mH×5.5kW, 380V)	개소	2(1)	()예비
	초음파수위계 (LT200 1ch : 리테크)	개소	1	
	오뚜기수위계 (2L-2Q2W : 투라인레벨)	개소	1	
	감시제어시스템 (HMI(CIMON), 화인시스템(주))	식	1	
	전기(수전방식 : 3Ø4W 380/220V, 15kW) (MCC반(B0.9m×L0.6m×H2.0m) 1면)	식	1	
	정전대비방재창고	개소	1	(2.4×2.4)
	비상펌프		2	
	창살형 웬스	m	54	(H=1.8m)
	출입금지 표지판	개소	1	
유량계실	구 체 (B2.6m×L2.1m×H1.1m) 유량계 (KFT-8200PLUS(100A), 한국유체기술(주))	식	1	
조 경	잔디블럭	㎡	169	
	경계석	m	45	
	광나무	주	270	

참고 2

〈 관 계 법 령 〉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5.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.

가.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·임대 및 사후관리

나.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유지·보수 및 개량
다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회활동 지원

제30조(관리권자 등)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
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리권자
2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
3.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

제31조(산업단지관리공단 등)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⑨ 관리공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.

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 등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산업단지의 관리업무)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
2. 공공시설,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
3. 산업용지의 매각·임대,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

4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·지식산업센터,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
5.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·전기·증기·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
6.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·유지·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
7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
8.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·기술·인력·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
9.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
10.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

제37조의2(관리업무의 위탁)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□ 산업단지 관리지침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

제4조(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) ① 관리업무는 법·영·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(이하 “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를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
③ 관리권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

제11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따른다.

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 동의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방법)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(이하 “경쟁방법”이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(위탁계약 체결)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4. 수탁기관의 의무

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